

# 이리부송초등학교규칙

제정 2000. 12.20.  
개정 2003. 02.17.  
개정 2006. 02.15.  
개정 2006. 04.11.  
개정 2006. 04.18.  
개정 2011. 05.02.  
개정 2015. 07.20.  
개정 2018. 08.28.  
개정 2020. 07.22.  
개정 2021. 02.28.

##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  
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칭) 본교는 이리부송초등학교라 한다.
- 제 3조 (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2길 27로 둔다.(개정2015.7.20)

##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입학 자격

- 제 4조(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조기 졸업의 승  
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년 수를 뺀 연수로 하고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또는 출석  
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취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년 수를 더한 연  
수로 한다.(개정2015.7.20)
- 제 5조 (입학자격)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5.2)
1. 초·중등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학령 아동
  2. 조기입학을 원하는 만 5세 아동 및 취학유예한 만 7세 아동

## 제 3 장 학생 수용

- 제 6조 (학생수용) ①본교는 학구 내 학령아동 전원을 수용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본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 학생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판단 하에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③ ②항의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7.20.)

**제 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학급편성 기준과 학생 수용 지표에 따른다.(개정 2006. 4.18.)(개정 2011.5.2)

**제 8조 (학급당학생정원)** 본교의 학급당 학생정원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6. 4.18.)(개정 2011.5.2.)

## 제 4 장 교육과정·수업 일수

**제 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6. 4.18) (개정 2011.5.2)(개정 2015.7.20)

**제 10조 (수업일수)** 본교의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5)(개정 2006. 4.18.)(개정 2015.7.20.)

**제 11조 (평가 및 과정수료의 인정)** (신설 2006. 4.18.)

① 학생의 평가는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실시하며, 학기마다 중간평가, 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5.7.20.)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제 12조 (학년·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 한다.(개정 2006. 2.15.)(개정 2011.5.2)

**제 13조 (휴업일)**(개정 2006. 4.18.)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4월 3일

3. 재량휴업일(단기방학),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 휴가, 교직원단체 행사일은 당해연도 학교교육과정운영 계획에 의한다.(개정2015.7.20)

4. 주5일제수업에 따른 토요일무일

② 제 ①항 제3호 내지 제4호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 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 할 수 있다.

**제 14조(체험학습)** (신설 2006.4.11.)(개정 2006.4.18.)(개정 2011.5.2.)(개정 2021.2.28.)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 ③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 ④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30일 연속 신청 가능)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에 의한다.

**제 15조 (학생자치활동) (신설 2006. 4. 11.)(개정 2011.5.2)**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어린이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 ③ 전교어린이회는 4학년 이상학생으로 조직하며 임원 출마 제한은 없으며 교사 개입은 금지한다.

**제 5 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 16조 (수료, 졸업)** 각 학년과 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하고 출석일수의 2/3이상 출석한 아동은 각 학년의 수료와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제 17조 (졸업장 수여)**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아동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18조 (취학의 유예)** 초·중등교육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 유예처분을 받은 아동은 유급 된다.

**제 19조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을 수 있다.

-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

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생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체험학습 기간
8.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⑦ 위 제③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 20조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 ① 결혼 : 형제, 자매(1일)
  - ② 입양 : 본인(20일)
  - ③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2일), 부모의 형제·자매(1일)
- ※ 단,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일부수정 2015.7.20.>

**제 21조 【생리결석 출결】** 여학생 생리결석 출석인정

- ① 시행대상 :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학생에 한함
- ② 인정기간 : 월 1회
- ③ 생리결석 확인 방법 : 담임이 학부모와 통화 확인하여 학교장이 결정
- ④ 출석 인정 시 성적처리방법 :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기본을 정하고 시행

**제 22조 【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6년간 결석 3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 23조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②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 6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 24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재능이 우수한 아동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
- ② 초등학교에서 조기진급은 1회에 한하여 시행한다.

**제 25조 (조기진급 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 재능이 우수한 아동에게 교과목별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 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개정 2015.7.20.)
-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에 관한 계획 수립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 조기수료 및 조기 졸업 인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제 26조 (조기 교육 대상)** 초등학교 1-5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27조 (조기이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교과목 선정)**

- ① 1,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로 한다.

② 3,4,5학년은 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실과(5학년)로 한다.

#### 제 28조 (학습운영방법)

- ① 교과목 능력에 따른 이동 수업을 허용한다.
- ② 일과 전후 보충 수업을 운영한다.
- ③ 방학 중 여름학교, 겨울학교를 운영한다.
- ④ 개별학습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공한다.
- ⑤ 심화 프로그램 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제 29조 (학습장소) 제28조의 ①, ②, ③항은 교내로 하고 ④, ⑤항은 가정으로 한다.(개정 2015.7.20.)

#### 제 30조 (교과목 조기이수 인정 평가 대상자 선정)

- ① 전 학년도 성적 성취도가 95%이상이어야 한다.
- ② 지능검사 IQ가 14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2015.7.20)
- ③ 창의성 결과가 90% 이상이어야 한다.
- ④ 학급 담임이 추천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 ⑤ 학년 재적수의 2%이내 수의 학생을 학급 담임이 추천하는 학생
- ⑥ 학부모 및 학생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허가를 동의하는 학생

#### 제 31조 (조기진급 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 ① 평가 위원은 전라북도 교육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세부지침에 의거 과목별로 2인 이상 담당교사로 한다.
- ② 평가 위원회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교무담당 교사로 한다. (2015.7.20.개정)
- ③ 평가 위원회는 해당 교과목별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수 인정 평가 문항을 제작하여 평가를 한다.
- ④ 평가 과목과 시기,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학생과 학부모에 알린다.
- ⑤ 교과목별로 조기이수 및 조기졸업 인정평가 시기는 사유 발생시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 32조 (교과목별 조기이수 평가 도구)

- ① (평가방법) 교과목별 특성에 따라 지필 고사, 실기 실험, 또는 구술 고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평가의 난이도) 해당 연도 차상급 학년의 최종 학기말 고사 난이도와 같은 수준에서 실시한다.
- ③ (출제범위)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 ④ (평가 문항 수) 평가 문항 수는 차상급 학생의 최종 학기말 교사의 평가에 준한다.

#### 제 33조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수준)

- ① 평가지의 난이도가 해당 연도 차상급 학년의 최종학기말 고사 난이도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
- ② 1,2학년은 국어, 수학이 조기이수 인정 평가의 학업 성취도가 80%이상 학생으로 한다.
- ③ 1,2학생은 바른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이 조기이수 인정평가의 학업

성취도가 70%이상의 학생이어야 한다.

④ 3,4,5학년은 국어, 수학, 사회, 자연(과학)은 조기이수 인정평가의 학업성취도가 80%이상 학생이어야 한다.

⑤ 3,4,5학년은 도덕, 음악, 미술, 체육, 실과는 조기이수 인정평가의 학업성취도가 70%이상 학생이어야 한다.

**제 34조** 전 교과목별로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학생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포기할 수 없다.

## 제 7 장 입학·전학·편입학

### 제 35조 (입학 시기)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재입학이나 편입학의 시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신설 2015.7.20.>

**제 36조 (입학 자격 및 결정)**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아동

③ 조기입학: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아동(1년 조기입학만 가능함)<신설 2015.7.20.>

### 제 37조(입학연기 및 취학의무 유예)

① 입학연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할 1년 연기하려는 자로서 입학연기 신청기한(12월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함.<신설 2015.7.20.>

② 취학의무의 유예(면제):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할 연기하고자 할 경우와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5.7.20.>

1. 구비서류 : 질병 외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읍·면·동의 장 소견서 중 어느 하나로 한다.

2. 학교별 취학 유예(면제) 위원회 구성·운영: 유예 신청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을 거쳐 결정한다.<신설 2015.7.20.>

3.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7.20.>

4. 취학의무의 면제: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7.20.>

**제 38조 (미입학 아동의 통보)**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학 절차를 필한 아동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 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실명을 동장에 통보한다.(개정 2015.7.20.)

**제 39조 (전학)**(개정 2011.5.2.) ①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읍, 면, 동의 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또는 그 사본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학하는 때에는 전입한 학교의 장이 당해 아동의 생활 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의 요청이 오면 본교 학교장은 이를 송부한다.

③ 전학은 교육법 시행령 제21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 40조 (출석정지)** 학교장은 전염병에 걸리거나 그 우려가 있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그 학생의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출석 처리한다.

**제 41조 (입학금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는 입학할 수 없다.

**제 42조 (입학결정)**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아동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개정 2015.7.20.)

**제 43조 (외국체류 중 귀국아동 편입학)**

① 외국 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 한다.

② 제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자녀로서 본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려는 자는 출입국사무소의 출입국증명서와 소정양식의 서류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 기타 귀국자녀등의 편입학은 전라북도교육청의 편입학 지침에 따른다.

④ 북한이탈학생의 편·입학 시 학년 배정은 북한에서 수학한 기간에 따라 학력을 인정하되,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교육 정도와 무관하게 그 해당연령의 학년에 배정하거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단, 재학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다.(신설 2015.7.20.)

**제 46조 (유예자들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를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7.20)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신설2015.7.20.)

## 제 8 장 상 별

**제 47조 (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아동, 근면성이 뛰어난 아동,

다른 아동의 모범이 되는 아동, 또는 여러 분야에서 특기를 발휘하는 아동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 48조 (징계) (신설 2006. 4. 11.)**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 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9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15조제7항에 따라 이리부송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조직·운영한다.
- ② 이리부송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이리부송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 ① 이리부송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교원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교원위원 3명, 외부위원 3명이상)
- ② 교권보호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5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 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심의사항) 교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 ③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④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10 장 기타의 비용징수(신설 2006. 4. 11.)(개정 2006. 4.18.)**

**제 53조 (기타의 비용징수)**

- ①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받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1 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22.2.28.)

### 제54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 제55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 제 12 장 학칙 개정 절차(신설 2006. 4. 18.)

제 56조 (학칙개정절차) 학칙의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 교직원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단 설치목적, 명칭, 위치, 남녀공학,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5.7.20)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본교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제3조 (경과조치)

2000년 12월 20일 제정

개정 2003년 02월 17일 1차 개정

개정 2006년 02월 15일 2차 개정

개정 2006년 04월 11일 3차 개정

개정 2006년 04월 18일 4차 개정

개정 2011년 05월 02일 5차 개정

개정 2015년 07월 20일 6차 개정

개정 2015년 08월 28일 7차 개정

개정 2018년 08월 28일 8차 개정

개정 2020년 07월 22일 9차 개정

개정 2021년 02월 28일 10차 개정

개정 2023년 02월 28일 11차 개정